

의안번호	제 153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3월 일 (제371회)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2월 26일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
----------	-----

발의연월일 : 2019년 2월 26일

발 의 자 : 송미애,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이옥규, 정상교,
박문희

1. 제안 이유

- 충청도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충청도민이 보다 생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신설함(안 제4조)
- 생활문화진흥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함(안 제5조)
-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6조)
-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과 충청북도 소유 유휴 공간에 대한 생활문화시설 활용,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 이용 제한 및 취소·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 2019. 2. 7. ~ 2019. 2. 17.(10일간)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장려를 통하여 지역 문화사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예술”(이하 “생활문화”라 한다)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과 그 결과물의 총체를 말한다.
2. “도민 생활문화단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가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3. “동호회”란 도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 나.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시설

마. 생활문화 지원센터

바.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 시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민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2. 도민 생활문화단체, 동호회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지원
3. 도민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활동의 사회적 공헌 기회 마련
4. 도민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사업
6.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도지사는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 격차 및 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도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사를 하여야 하며, 장기적이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와 동호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 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가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군·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시행계획 및 시·군·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자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이하 "문화환경 취약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
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
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
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분
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
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장 김 연 준